

외국환거래제도

2016. 8.

관세청 외환조사과

목 차

- I. 외국환거래제도의 개요
- II. 지급과 수령
- III. 지급과 수령 방법
- IV. 기타 외국환거래 절차
- V. 외국환거래법상 처분제도



I . 외국환거래제도의 개요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2.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특징
3. 기관별 외국환관리 역할
4. 외국환거래법 체계
5.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 수단적 목적

-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보장 / 시장기능의 활성화

◆ 기능적 목적

- 대외거래의 원활화 / 국제수지의 균형 / 통화가치의 안정

◆ 궁극적 목적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 외국환거래법 제1조

※ (외환제도의 필요성) 외환시장이 투기적, 불법·편법적 거래에 놓여 충격을 받거나, 시장왜곡 현상으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할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 개입하여 일정한 제한

<외국환거래법 제 1조(목적)>

이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특징

- ◆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 6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
 - 지급 · 수령 · 거래의 정지
 - 지급수단 · 귀금속의 예치 · 매각 의무 부과
 - 자본거래 허가제 및 취득 지급수단의 예치 의무 부과
 -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 - 확인 · 신고업무 등 위탁
 - ◆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원칙적 자유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유사시 테러자금 등을 제외하고 허가제 폐지
 - 외환거래의 적정여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 ◆ **위임입법 형식** -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탄력적 운영
 - 외국환거래법 - 시행령 - 외국환거래규정* : [구체적인 세부사항 규정](#)
- * 기획재정부고시, 상위법으로부터 적정 위임과정을 통해 법적효력 발휘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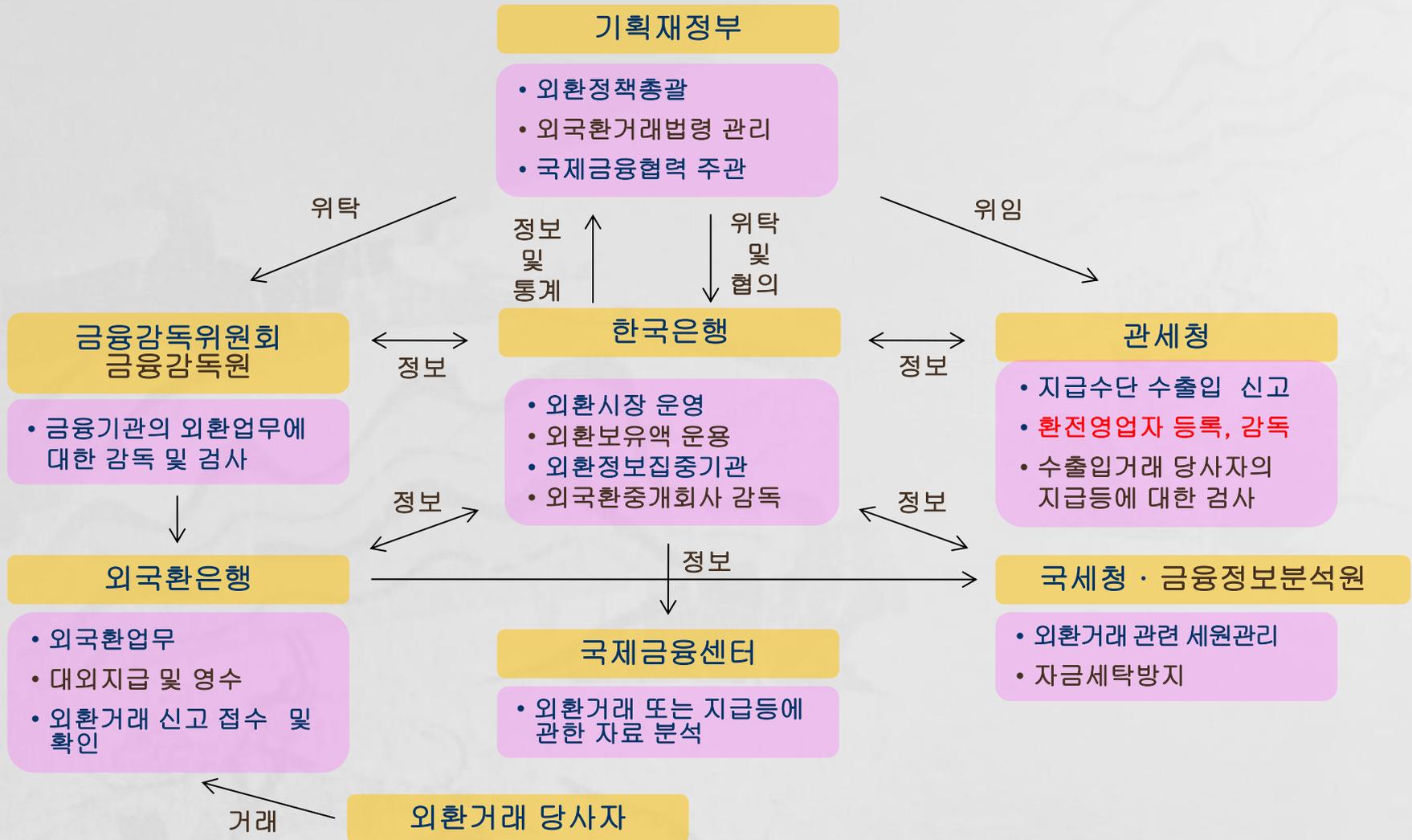
② 법 제16조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외국환거래규정 제5-1조(적용범위)>

법 제16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기관별 외국환관리 역할

- ◆ **기획재정부**(외환정책 총괄, 법령 관리)
- ◆ **한국은행**(외환시장 운용, 정보 집중, 외국환중개회사 검사)
-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금융기관과 거래당사자 검사)
- ◆ **외국환은행**(외국환업무, 지급 및 수령)
- ◆ **관세청**(지급수단 휴대수출입, 수출입관련거래, 환전영업자 검사)
- ☞ **사법경찰권 부여(수사)**
 - ◆ **국세청**(세원관리, 역외탈세)
 - ◆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 ◆ **국제금융센터**(외환정보분석기관)



4. 외국환거래법 체계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환율,
채권회수명령 등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13조~제14조)

거래당사자
(개인, 업체 등)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
기관등(제8조~제12조)

해외거래자
(개인, 업체 등)

제4장 지급과 거래(제15조~제18조)

지급 절차 및 허가, 지급방법, 외화
등의 수출입, 자본거래신고 등 규정

제5장 보칙(제19조~제26조)

검사, 통보, 비밀보장, 위임 등

제6장 벌칙(제27조~제32조)

벌칙, 몰수, 양벌, 과태료 등

5.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 인적대상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원 칙		대한민국 내 개인, 법인	거주자 이외의 개인, 법인
개인	경제활동	국 내	해 외
	거주기간	국민 : 3개월 외국인 : 6개월	국민 : 2년이상 체재 외국인 : 3개월 체재
법인	주소지	국 내	해 외
예외조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소속 국민	주한 외국공관 소속 외국인 주한미군, 국제기구

- 국적과는 관계없이 거주지역, 경제적 밀착성 등에 따라 결정
- 부양가족의 거주성 : 생계제공자와 동일하게 거주성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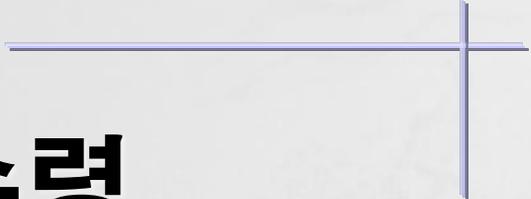
◆ **대상행위** : 거주자간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 비거주자간 거래

- 대한민국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수령
-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거래
- 거주자가 외국에서 국내의 재산·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등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행위뿐 아니라 거주자간 외환거래(환전, 외화 매매 등)와 비거주자간 원화거래도 대상행위에 포함된다

☞ [판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은 단순히 외국환의 이동이 수반되는 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에 관련성이 있으면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도 포함된다

▶ 해외카지노 대금, 물품 대금 등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인의 예금계좌로 원화를 입금(환치기 등)하는 경우라도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



II. 지급과 수령

1. 지급과 수령 절차
2.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절차
3.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4.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1. 지급과 수령 절차(법 제15조)

□ 개요(규정 4-2조)

- 건당 미화 2천불 초과 지급·수령(이하 "지급등")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증빙서류 제출
- 지급등 또는 그 원인거래, 행위가 법령에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등을 하여야 함
- 외국환법령 위반시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등 가능
 - ⇒ 제재처분 확정시 까지 지급등 중단가능
-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휴대수출입을 통한 환전 포함)을 하여야 함

□ 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규정 4-3조)

< 증빙서류 미제출(외국인 거주자 제외) ※ 확인은 받음 >

- 미신고 지급거래로서 ①연간 누계 미화 5만불 이내
②연간 누계 미화 5만불 초과거래로 거래 내용과 금액을
외국환은행장이 확인 가능한 경우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미신고 수령거래. 단, 동일자·동일인 미화 2만불 초과
거래는 외국환은행장이 서면으로 수령사유 확인

- 전년도 수출(수입)실적 미화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의 수출(수입)대금의 수령(지급)

⇒ 증빙서류 5년간 보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

□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의 지급(규정 4-4조)

< 자금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하여 외국환은행장 확인 후 지급가능 >

- 외국으로부터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
- 규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
- 국내보수, 소득, 사회보험 등 범위 이내 ⇒ 지정 은행
- 제7장 ~ 제9장(자본거래, 현지금융,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의 규정에 따라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지급

2.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절차(규정 4-5조)

○ 해외여행자

외국환은행을 통하거나 휴대수출(5-11)하여 지급,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포함(현지 외국통화 인출 포함)

○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해외유학 입증서류 제출

○ 법인에산으로 소속 임직원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할 경우

법인명의 환전 지급 또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등 지급가능

3.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규정 4-6조)

- 아래의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거나 휴대수출(5-11)하여 지급
 - 국내이주 : 해외이주신고서 발급받는 날(외교통상부)
 - 현지이주 : 최초 거주여권 발급받는 날(재외공관)
- 이주예정자가 영주권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거나 휴대수출(5-11)
 - ⇒ 지급 후 1년 이내 영주권등 취득서류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 또는 자금회수
 - ⇒ 취득기간 경과시 서류제출기한 연장
- 이주자(이주예정자)는 세대별 지급누계가 미화 10만불 초과시 관할세무서장 발급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게 제출

4.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규정 4-7조)

- 재외동포가 아래 재산 국외반출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부동산 처분대금,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 담보 외국환은행의 원화대출금,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 취득경위 입증서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
 - 부동산처분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
 - 부동산 이외 재산 지급누계 미화 10만불 초과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거나 휴대수출
 - ⇒ 자본거래절차 미적용

III. 지급과 수령 방법

1. 지급과 수령 방법 신고 개요
2. 상계 및 상호계산
3. 기간초과 지급등
4. 제3자 지급등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1. 지급과 수령 방법 신고 개요

◆ 외국환거래에 따른 결제(지급, 수령) 원칙

★ 외국환거래시 준수할 절차를 규정(법 16조)

원칙	한국은행총재등 신고(사전신고)
○ 거래 전후 일정한 <u>기간</u> 내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 당해 거래 <u>당사자</u> 간에	○ 제3자 지급등
○ <u>외국환은행</u> 을 통하여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
○ 실제로 결제(<u>거래건별</u>)	○ 상계에 의한 지급 등

2. 상계 및 상호계산(규정 5-4조~5-7조)

- ◆ 거래의 결제에 있어 상호간 채권·채무를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원칙)
 - ◆ 상계 : 일회적(양자간 일반상계, 다자간 상계 등)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 미화 2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
 - 상호계산계정을 통한 결제(지정거래은행에 계정개설 신고)
 - 위수탁가공무역, 연계무역에 의한 수출입 대금의 상계
 -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과의 상계 등
 - 신고기관 : 외국환은행장
 - (예외) 다자간 상계,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 상계 : 한은총재
 - ◆ 상호계산 :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신고(상호계산 신고서)
- ※ 상계 및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의무

◆ 상계, 다자간 상계, 상호계산

- 상계 : 이미 발생한 별건의 채권, 채무를 상쇄하는 행위
- 다자간 상계 : A사가 B사에 대한 채권과 C사에 대한 채무를 일괄 상쇄하는 것
- 상호계산 : 앞으로 발생할 채권, 채무를 상계후 차액만 결제하겠다고 신고하는 것

◆ 상계의 성립

- 상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 또는 행위에 따라 상호간 채권과 채무를 실제 결제하지 않고 상호 합의하에 회계적으로 결제 처리하는 것을 의미
- 상계 대상 채권과 채무는 서로 동일한 거래나 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는 안되고 독립적이어야 함

[사례1] 수입신고 금액에서 같은 수입신고건의 '크레딧 메모'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 행위가 상계 신고대상인지?

- ☞ 상계의 대상은 병존하는 각기 다른 계약건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상쇄하여 서로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딧 메모(손실 보전)을 받은 금액을 수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지불한 것은 동일한 계약건에 대한 '지급금액 조정(변경) 사항' 으로 상계신고 대상 해당 **없음**

3.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초과 지급등

◆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규정 5-8조)

○ 미화 5만불 초과 수출대금 수령 (선수금 수령)

- 본지사간 수출거래 : 사전수령/무신용장인수인도조건 3년 초과 수령
- 비 본지사간 수출거래 : 1년 초과 사전수령 등

○ 수입대금 지급 (선금금 지급)

- 계약건당 미화 5만불 초과 미가공 재수출 금 수입 : 30일 초과 지급
- 계약건당 미화 2만불 초과 물품 : 수령전 1년 초과 송금방식 지급

◆ 대응수출입 이행의무(규정 5-9조)

- 건당 미화 5만불 초과 수출대금 사전수령시
- 건당 미화 2만불 초과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 기간초과 결제를 제한하는 이유

- ▶ 본지사간에 무역거래를 빙자하여 불법적인 자금지원, 음성적 자본거래, 밀어내기식 수출을 방지하기 위함
 - 선급금 : 불법적인 지원, 일종의 대출 성격이 있음
 - 선수금 : 해외법인의 자금을 선수금인 것처럼 반입한 후 변칙적으로 운용 가능(사주 등 특정인의 특정한 목적에 유용 가능)

[사례1] 거주자가 제3국에서 사용될 귀금속을 구매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에게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1년을 초과하여 제3국에서 사용한 것이 기간초과 지급인지?

☞ ‘물품의 수령일’ 해석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2호의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소유권이전일’을 수령일로 보고 있어(외환제도과 유권해석) 구매한 귀금속이 거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수령일)된 날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초과지급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수수입 해당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후 적용 가능

※ 수령의 의미 : 통상적으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소유권이전일을 수령일로 볼 수 있음

4. 제3자 지급등(규정 5-10조)

- ◆ 원칙적 한국은행종재 신고, **미화 1만불 이내 외국환은행장 신고**
-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 미화 2천불 이하의 제3자 지급건
 -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15.1.1~)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의 이전을 포함)
 - 단순수입대행을 의뢰한 수입자(납세의무자)가 수입대금을 수출자(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인터넷 물품구매시 수입대금을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구입자가 구매대행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
 - 비거주자간 인터넷 물품매매대금을 구매대행업체인 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구매대금을 받은 대행업체가 지급하는 경우

■ 「인정된거래」의 이해

- 외국환법규상 '인정된거래'가 빈번히 등장하나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라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 동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외환법규를 해석하거나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움
- ◆ **인정된거래**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함(규정 제1-2조)
- ◆ 즉, 원인행위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결제방법(지급등의 행위 내지 방법)이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대상 거래이면 '지급등의 방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인정된거래라고 할 수 없음
- ◆ 예를 들어 경상거래 자체는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대상 거래가 아니지만 그 결제방법이 신고등의 대상거래이면([ex] 상계, 제3자지급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 신고를 요하는 거래이므로 인정된거래라고 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경상거래 또는 자본거래시 **원인행위 뿐만 아니라 동 원인행위에서 파생되는 지급등의 결제행위까지 포함하여 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이 면제되는 거래라면 '인정된 거래'라고 규정할 수 있음**
- ◆ **규정 제5-10조 제7호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 채권에 대한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 등에 대한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거나 확인시켜줘야 함**

◆ ‘제3자 지급등’ 개념

- ▶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비거주자간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 당해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 ▶ 즉, 3자지급이란 제3자가 일방의 거래당사자와 결제하여 종결하는 것을 말함

◆ ‘제3자 지급등’ 을 제한하는 이유

- ▶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지급 등으로 거래를 종결하는 경우 **불법적인 자본의 유출, 마약 등 불법자금의 세탁, 관세 등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신고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한은총재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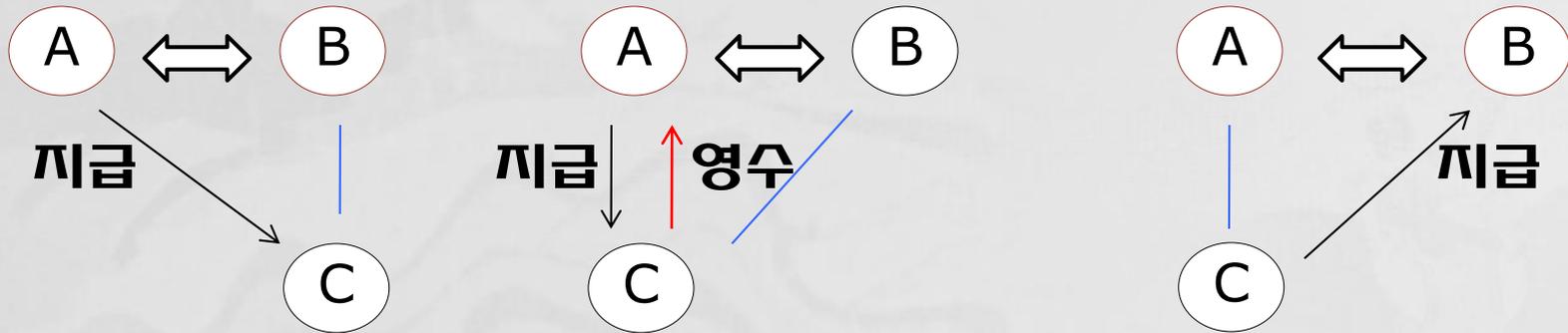
◆ 거래당사자 결정 요소

- ▶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계약체결자를 의미. 다만, 계약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① 주문서와 청구서 등 관련서류에 명시된 청구자 또는 수익자, ②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 분쟁의 책임자, ③ 그 외 거래 관련 서류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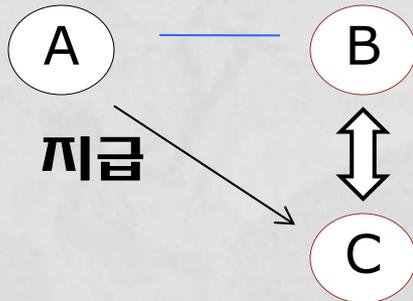
※ 거래당사자 판단 기준 : ① 계약서 서명자, ② 주문서, 청구서에 명시된 청구인, 수익자, ③ 하자 등 분쟁책임자, ④ 정당한 위임관계가 형성된 자

[참고] 신고대상인 제3자 지급 수령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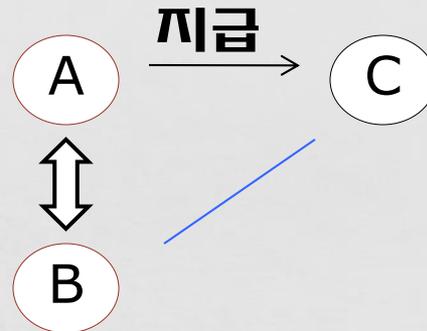
○ 거주자(A)와 비거주자 (B)간 거래에서



○ 비거주자 상호간(B, C) 거래



○ 거주자 상호간(A, B) 거래



※ 2015. 1. 1. 이후 거주자로부터의 영수 신고 예외로 개정

- ◆ [사례 1] 계약서(A), B/L상 SHIPPER(B), DEBIT NOTE/INVOICE(C), 실제 물품 제공자(D공장)일 경우 거래당사자?
 - ▶ 계약서상 명시된 A가 거래당사자 : 제3자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는 지급수단의 흐름을 규정하는 것이지 물품의 흐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품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수령하더라도(대외무역법상의 저촉여부는 별도) 대금(지급수단)을 계약의 당사자간에 주고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로 봄

- ◆ [사례 2] 계약서상 AGENT 등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 ▶ 계약서상 명시되어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AGENT 등은 대리인으로서 대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도 제3자지급으로 판단

- ◆ [사례 3] 회사 대표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 ▶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구분되는 것임. 따라서 법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대표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법인명의로 상대방 대표에게 송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도 3자지급에 해당. 단,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동일시되므로 3자지급에 미해당

- ◆ [사례 4] 수출상이 국내에 개설한 대외계정, 혹은 수출상 명의 제3국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 ▶ 당사자간 거래로 인정되므로 3자지급에 미해당
 - ▶ 거래당사자 명의만 일치하면 되고 거래국가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즉 어느 국가로 송금하는지 여부는 제한규정이 없음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의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 수령(원칙)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규정 5-11조)

- 거주자가 지급수단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해외여행자가 해외여행경비 등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1만불 초과 해외여행경비는 출국시 세관신고 필요
 - 1만불 초과 유학경비, 해외체재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확인 필요
-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신용카드 등으로 해외에서 여행경비등을 지급하거나, 인정된 거래 자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등

◆ 상기 이외는 한국은행총재 신고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의 방법’ 을 제한하는 이유

- ▶ 당해 지급 및 수령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가 신고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먼저 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외국환은행이 확인하도록 절차를 두고 있음
-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 **효율적인 외국환(신고등)관리 및 통계수집 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

◆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는?

- ▶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이 아님. 따라서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은 총재 신고대상임

※ 신고예외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자본 거래 제외)에 따른 결제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가능

◆ 신용카드 결제 규정

- ▶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대금 지급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문제가 없으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수입대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자본거래 등 채무변제를 위한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임 (연간 대외지급 실적이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신협회장이 국세청에 통보)
- ▶ [참고]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받은 자체만으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54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절차가 필요치 않음

- ◆ **[사례1]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대금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 ▶ 비거주자가 수출대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 입국시 관할세관에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거주자(수출자)는 수출대금 수령 전에 비거주자(수입자)가 동 신고를 필하도록 하여야 함
- ◆ **[사례2]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신고를 하고, 외화를 휴대해서 나갈 때도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 ▶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방법등의 신고를 한 경우 세관 신고 없이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으나, 신고필증을 세관장에게 제시하여야 함
- ◆ **[사례3] 물품을 수입한 후 수입대금을 현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필요?**
 - ▶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를 현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한국은행에 하여야 함. **현물로 영수하는 경우도 신고대상**
- ◆ **[사례4] 해외 수출자가 직접 대금을 수령하여 휴대반출 하는 절차?**
 - ▶ 국내 수입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외 수출자는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확인을 받아야 함

■ 신고대상 지급 방법

구 분	신고기관	신고 예외 금액
상계 -다자간 상계 -다국적기업 상계센터 상계 상호계산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미화 2천불 이하
기간초과 지급등	한국은행 총재	미화 5만불 이하 수출 미화 5만불 이하 미가공 재수출 금 수입 미화 2만불 이하 수입
제3자지급등(현물 영수) -미화 1만불 이내	한국은행 총재 -외국환은행장	미화 2천불 이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 -해외여행경비 -유학경비, 해외체재비, 이주비	한국은행 총재 -세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미화 1만불 이하

IV. 기타 외국환거래 절차

1.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2. 채권의 회수명령

3. 환치기

4. 환전영업자

5. 자본거래



1.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지급수단등 : 지급수단, 증권

◆ 신고면제(규정 6-2조)

-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 수출/ 지급수단등 수입
- 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 수입
- 사전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등을 한 자가 그 허가나 신고된 내용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 등
- 거주자가 수출대금 수령을 위해 외화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

◆ **세관 신고사항**(규정 6-2조)

-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원화현찰, 원화자기앞수표를 휴대출국 불가
외화를 정당하게 소지하였다면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휴대→신고不要

* 별지 제6-1호 서식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 **관할세관 신고사항**(규정 6-3조)

- 기타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 제외하고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 세관장 신고
- 신고양식이 다르며 이경우에는 지급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별지 제6-2호 서식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

◆ **세관장의 수출입 제한 조치 등**(규정 6-4조)

- 입출국하는 자의 지급수단등 수출입신고등 여부 확인 의무
- 수출입 신고 및 제한 조치

2. 채권의 회수명령

◆ 원칙

-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보유 거주자는 당해 채권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 회수

◆ 건당 회수대상 채권액

- 1961년 외환관리법 제정 : 비거주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대한 회수의무부여
- 1991.12.27~ : 건당 미화 5만달러 초과 채권
-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1999.4.1~)

1999.4 ~ 2002.7.1	2002.7.2 ~ 2004.9.2	2004.9.3 ~ 현재
건당 미화 5만달러 초과	건당 미화 10만달러 초과	건당 <u>미화 50만달러 초과</u>

◆ 회수 기한

1999.4 ~ 2005.12.31	2006.1 ~ 2014.12.31	2015.1.1~ 현재
채권만기일로부터 6개월내	채권만기일로부터 <u>1년6개월내</u>	채권만기일로부터 <u>3년</u>

◆ 건당의 의미

-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금액(채권 원인행위 입증 : 계약서 및 INVOICE, 수출신고서 등)
- ☞ 분할영수액이 50만불 이하라도 계약 총액이 50만불 초과시 회수의무 부여
- ☞ 50만불 이하로 쪼개서 여러 번 계약하는 경우 회수의무는 없음

◆ 채권회수 의무 부담자

- 거주자만 해당
- 채권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양도된 경우 채권회수의무는 양수인에게 있다
- ☞ 거주자가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수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대외채권 회수 의무는 사라진다.
단, 일부 수령의 경우 미회수분은 회수대상채권일 수 있음

◆ 채권만기일 or 조건성취일

-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정 시점이 도래한 날(유권해석)

[사례 1] 비거주자간 채권을 거주자가 채권자인 비거주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동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은?

(채권 매입전 비거주자간 채권의 만기 도래)

- ☞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은 당사자간 합의된 계약에 따라 정해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경우 새로운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한 것이므로 합의된 계약조건에 명시된 때

[사례 2] 수출대금을 2년후에 받기로 하고 수출한 경우 대외채권회수기한은?

- ☞ 채권의 만기일인 2년 경과시점으로부터 3년(1년6개월) 내 채권회수해야함.
다만, 본지사간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전에 수령하거나
무신용장 인수인도방식인 경우 결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물품 선적 후에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또는 본지사간이 아닌 거래로 물품 선적전 1년 초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 수출 전에 한국은행에 기간 초과 지급 신고 대상

3. 환치기

◆ 개념

-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면, 환치기업자는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동 금액 상당의 외화를 해외에서 목적인에게 전달
-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대체송금’이라고도 불리며, 신속한 처리 및 송금사실의 은폐가 가능
- 밀수대금, 저가 수입신고 차액대금, 재산국외도피 등 수단으로 이용

◆ 처벌 규정

- 환치기업자 : 외환거래법 제8조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죄’ 로 처벌
- 환치기송금자 : 외환거래법 제16조 3호(제3자지급), 4호(외국환은행을통하지않은지급)
- 불법송금 목적에 따라 관세포탈, 밀수입, 불법자본거래, 재산국외도피죄 등 추가

4. 환전영업자

◆ 관련 법규

- 환전영업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매가로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매입할 수 있다(규정 3-2조)
-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8조 4항)
-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은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규정 7-20조 2항)

환전상은 외국환은행의 보조역할로서 해외여행객들이 남겨온 외화등을 수집하여 외국환은행에 집결시키는 수집상의 역할로 원칙적으로 외화를 매도해서는 안됨
- 재환전 및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 매도 가능

◆ 처벌 규정

- 여행사 등에 외화를 불법으로 매도한 환전상은 무등록외국환업무 영위(외국환거래법 제8조) 또는 불법 자본거래(대외지급수단 불법매매, 외환18조, 규정7-20조)로 처벌
- 환전상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환전한 자(여행사 등)는 불법 자본거래(대외지급수단 불법매매, 외환18조, 규정 7-20조)로 처벌

5. 자본거래 (법 18조)

◆ 규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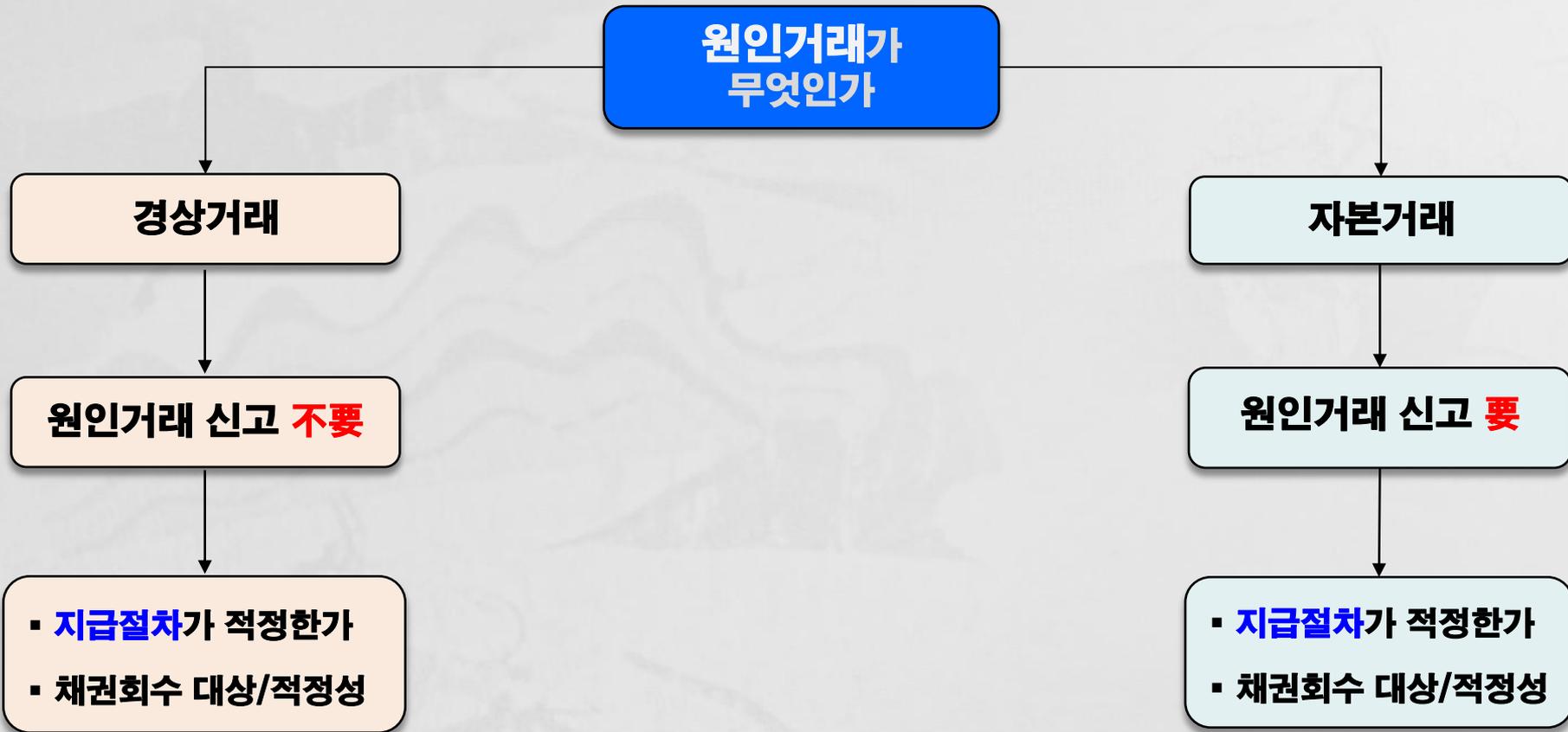
- 자본거래를 하려는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원칙)
- 자본거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06.1.1 ~)
 - 해외부동산 취득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수리제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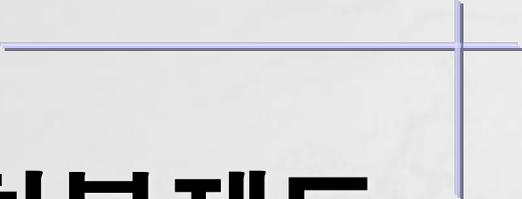
◆ 자본거래의 유형

- ① 예금 및 신탁거래
- ② 금전대차 및 채무의 보증거래
- ③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예약
- ④ 증권의 발행
- ⑤ 증권의 취득
- ⑥ 파생금융거래
- ⑦ 부동산 거래
- ⑧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 ⑨ 기타 자본거래
- ⑩ 현지금융
- ⑪ 해외직접투자
- ⑫ 외국인 직접투자 등

* 일반적으로 5만불 이내의 거래 / 연간 5만불 이내는 신고 예외

■ 외국환거래 적정성 체크





V. 외국환거래법상 처분제도

1. 행정처분
2. 과태료
3. 벌칙



1. 행정처분(법 19조)

- ✓ 적용대상 : 일반거래당사자 등
(지급절차 위반, 지급방법신고 위반, 자본거래신고 위반 등)
 - ✓ 처분내용 : 경고 또는 거래정지 제한 등
 - ✓ 경고
 - 신고사항에 정하여진 기한 경과 후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금액이 1만불(자본거래신고는 2만불)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
 - ✓ 거래정지·제한
 - 최근 2년 이내에 신고 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1년 이내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 정지/제한
- * 행정처분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벌칙(1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29조**)

2. 과태료 (법 32조)

✓ 외환거래법 16, 18조 위반시 과태료 신설

~ '09.2.3	'09.2.4 ~ '11.7.30	'11.8.1 ~
모두 별칙	- 16조 : 건당 5억원 이하 - 18조 : 건당 10억원 이하	- 16조 : 건당 25억원 이하 - 18조 : <u>건당 50억원 이하,</u> * <u>10억원('16.3.22~)</u> - <u>17조 : 미화 1만~3만('16.6.3~)</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 : 1%(<u>50만원</u>),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 2%(<u>100만원</u>) - 지급수단 미신고 : 5% - 건별 과태료 상한액 : 5천만원 		

- ✓ 과태료 부과 기관 : 관세청(세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 의견진술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 ✓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과태료 부과
- ✓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재판절차 진행

3. 벌칙(법 27조~31조)

✓ 벌칙 내용

○ 허가 등 위반(제27조) /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

- 3년 이하의 징역
- 3억원 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신고등 위반(제29조)/지급방법 · 자본거래 · 지급수단수출입 위반 등

※ '16. 6. 3.~ 미화 3만불 초과의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 1억원 또는 목적물 가액의 3배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 몰수·추징 : 위반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 등

✓ 양벌 규정 : 법인 등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한 위반시 법인 등도 처벌

✓ 미수범 처벌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위반(제17조)은 미수범도 처벌

감사합니다.

